



서울 행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구단76884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피 고 ○○특별시 ○○구청장
변 론 종 결 2025. 2. 26.
판 결 선 고 2025. 4.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1. 8.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B(이하 '고인'이라 한다)가 2023. 6. 23. 사망함에 따라, 원고는 2023. 6. 23. 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 ○○구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제1 주



택'이라 한다)의 9/10 지분을 상속받아 취득하였고, 2023. 12. 29. 피고에게 지방세법 제 11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규정된 2.8%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72,651,600원, 지방 교육세 4,151,520원, 농어촌특별세 5,189,400원의 합계 81,992,5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24. 1. 2.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주택의 취득이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1가구 1주택의 취득으로 0.8%의 특례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납부 취득세 등 합계 57,083,4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24. 1. 8.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제1 주택을 취득할 당시 원고와 주민등록표에서 동일한 세대 구성원으로 등재되어 있던 원고의 형제 E이 ○○ ○○구 F 건물, G호(이하 '이 사건 제2 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어 이 사건 제1 주택의 취득이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8,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이 사건 제1 주택 취득 당시 원고의 동생인 E은 실제 거주하는 ○○ ○○ 구 H 소재 주택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어 그곳에 전입신고할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시 ○○구 I건물, J호(이하 '이 사건 제3 주택'이라 한다)에 전입신고를 함에 따



라 원고와 주민등록표에서 동일한 세대 구성원으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원고와 이 사건 제3 주택에서 생계를 같이하며 실질적으로 동거하지 않았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원고의 이 사건 제1 주택 취득에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1가구 1주택의 특례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례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2)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은 '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상속인(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같은 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상속인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그 부모는 각각 상속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주택(법 제11조 제1항 제



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되, 제28조 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민등록법 제7조 제4항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의 서식 및 기록·관리·보존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등재순위는 세대주,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의 순위로 하고, 그 외에는 세대주의 신고에 따른다. 다만,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동거인란에 기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779조 제1항 제1호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는 가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89조에서는 '1가구'와 달리 '1세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같은 법 제88조 제6호에서는 '1세대'를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바, 이는 지방세법에서 말하는 '1가구'와는 다른 용어이다.

이러한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한 '1가구'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재만으로 '1가구'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되, 상속인의 배우자와 일정 범위의 직계비속 등은 이와 상관없이 '1가구'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므로, 그 문언대로 '상속인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재에 따라 획일적으로 판단하여



야 하고, 지방세법상 '1가구'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 축소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

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고인의 사망으로 이 사건 제1 주택을 취득할 당시 원고가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원고의 동생인 E이 원고의 '제'로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원고와 E이 이 사건 제3 주택에서 실제로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모두 1가구에 속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1가구가 이 사건 제1 주택 및 이 사건 제2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제1 주택 취득은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한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



별지

관계 법령

■ 지방세법

제5조(「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을 적용한다.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 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의 취득

■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상속인(「주민등



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같은 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상속인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그 부모는 각각 상속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주택(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되, 제28조 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 지방세기본법

제17조(실질과세)

-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가 서류상 귀속되는 자는 명의(名義)만 있을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주민등록법

제7조(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시스템(이하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이라 한다)으로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주민등록표”라 한다)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를 작성하고 기록·관리·보존하여야 한다.
- ④ 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의 서식 및 기록·관리·보존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 ① 법 제7조에 따른 개인별 주민등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세대별 주민등록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 ②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등재순위는 세대주,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의 순위로 하고, 그 외에는 세대주의 신고에 따른다. 다만,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동거인란에 기록한다.

■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 끝.